

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

※ 제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5쪽 중 제1쪽)

[illegible]

1. 연결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역

[illegible]

2. 연결 후 발생한 결손금(이월결손금 및 당기 결손금) 등 증감내역(가+나+다+라)

㉒ 사업 연도	㉓ 연결 법인명	㉔ 사업자 등록번호	㉕ 발생액	감소내역				잔액		
				㉖ 기공제액	㉗ 당기 공제액	㉘ 보전	㉙ 계	㉚ 기한 내	㉛ 기한 경과	㉜ 계
	소계									
	소계									
	소계									
	소계									
합 계										

가. 결손금

㉓ 사업 연도	㉔ 연결 법인명	㉕ 사업자 등록번호	㉖ 발생액	감소내역				잔액		
				㉗ 기공제액	㉘ 당기 공제액	㉙ 보전	㉚ 계	㉛ 기한 내	㉜ 기한 경과	㉝ 계
	소계									
	소계									
	소계									
	소계									
합 계										

나.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

[illegible]

다.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

[illegible]

라.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

66 사업 연도	67 연결 모법인명	68 사업자 등록번호	69 발생액	감소내역				잔액		
				70 기공제액	71 당기 공제액	72 보전	73 계	74 기한 내	75 기한 경과	76 계
합 계										

3. 연결법인별 결손금(이월결손금 및 당기 결손금) 증감내역

㉟ 연결 법인명	㊱ 사업자 등록번호	㊲ 사업연도	㊳ 발생액	감소내역				잔액		
				㊴ 기공제액	㊵ 당기 공제액	㊶ 보전	㊷ 계	㊸ 기한 내	㊹ 기한 경과	㊺ 계
		소계								
		소계								
		소계								
		소계								
합 계										

작성 방법

1. ③ 법인구분 및 ④ 구분코드란: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.

법인구분	연결모법인	연결자법인	연결취득자법인
구분코드	100	200	300

* 연결자법인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구분

- 연결자법인: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
 - 연결취득자법인: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
2. ⑤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: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(별지 제76호의7서식) ③① 연결소득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3. ⑥ 연결 전 결손금공제란: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 따라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중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4. ⑦ 해당 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란: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후에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5. ⑧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란: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다른 연결법인의 “연결소득 개별귀속액”에서 공제(연결소득 개별귀속액 비율대로 배분하여 공제)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- 연결납세방식 적용 이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해당 법인은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연결법인의 “연결소득 개별귀속액”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을 의미합니다.
6. ⑩ 공제대상 결손금배분액란: ⑨ 총공제가능결손금을 각 연결법인에 배분한 금액을 적습니다. 결손금 공제 시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법인의 “차감연결소득 개별귀속액”에서 우선 차감합니다.
7. 연결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역: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증감내역을 적습니다.
- 가. ⑪ 사업연도란: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.
- 나. ⑰ 보전란: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,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니다.
8. ⑳ 기한경과란, ㉑ 기한경과란, ㉒ 기한경과란 및 ㉓ 기한경과란: 공제기한(2019. 12. 31.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, 2020. 1. 1.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)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잔액을 적습니다.
9. 연결 후 발생한 이월결손금(이월결손금 및 당기 결손금) 등 증감내역: 연결 후에 발생한 결손금,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14 제2항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손금에 불산입되어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이후 연결 사업연도에 공제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, 연결모법인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의 증감내역 및 증감내역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④⑦ 발생액, ⑤⑧ 발생액 및 ⑥⑨ 발생액란: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의 처분손실 중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을 적습니다.
10. 연결법인별 결손금(이월결손금 및 당기 결손금) 증감내역: 각 연결법인별로 연결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및 연결 후 발생한 결손금 증감내역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